

검 토 보 고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8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과 사료값 인상과 소고기·우유소비의 감소로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농가가 자가 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 도축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방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시세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적용함. (안 제 12조 제 2호)
- 나.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.(안 제 14조의 2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기존의 파주시시세감면조례에서
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
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주택건설 경기활성화를
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
- 소값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
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'99.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
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어려운 지역경제
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도축세의 경우 안 제14조의 2 단서규정에 도축된 소를
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
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이를 추적 관리하는 일이
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며
- 대형 가축인 소를 농가에서 자가 소비만을 위해 도축하는 것은
흔치 아니한 경우이므로 도축세 감면에 따른 성과는 기대만큼
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